

의안번호	2206230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4.12.30.
추계번호	24E570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5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(안 제59조의4제8항)	-	-564	-	-	-	-56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4제8항 (특별세액공제)	○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- (현행)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 30%(단, 2024.1.1. ~ 2024.12.31. 동안 기부금에 대해 3천만원 초과시 10%p추가) → (개정안) 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50% (단, 2024.1.1. ~ 2024.12.31. 동안 기부금에 대해 3천만원 초과시 10%p추가, 2025.1.1. ~ 2025.12.31. 동안 기부금에 대해 3천만원 초과시 20%p추가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4제8항(특별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,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.1.1.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 -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, 동 법은 2025.1.1.부터 시행한다고 전제
 - 근로소득세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 연말 정산시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,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-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및 종합소득 신고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추계
 - 1인당 기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자에 대한 기부금 대상금액 및 기부금 세액공제액,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각각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활용(가장 최신인 2022년 귀속 기준)
-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을 것으로 가정
 - 세제 변화 시,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기부금액이 변화할 수 있으나, 연구자별·방법별로 가격탄력성(0.16~9.9)이 다양해 이를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-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1인당 기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인당 기부금액을 구한 후, 이에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1인당 세액공제액 변화분을 도출하였으며, 이에 총 대상 인원을 곱해 추계
 -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및 종합소득 신고현황자료를 활용
 - 단,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
 - － 2022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 3천만원 이상인 자는 총 3,370명(공제대상 기부금 2,243억원)이나, 이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2,136명(공제대상 기부금 1,657억원)으로, 중복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은 1,234명(공제대상 기부금 586억원)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, 2022년 근로 및 종합소득세 귀속 기준
-1인당 기부금액 3천만원 이상인 자 기준-

(단위: 명, 백만원)

	총계		1인당				총세수감소 효과
	인원수	공제대상 기부금	공제대상 기부금 ¹⁾	1인당 공제세액 - 개정 전	1인당 공제세액 - 개정 후	1인당 세수효과	
	(A)	(B)	(C)	(D)	(E)	(F) =E - D	(G) =A×F
합계(A+B)	4,249	409,294	-	-	-	-	56,364.8
종합소득세(A)	3,015	350,694	116.3	33.4	50.7	17.3	52,048.8
근로소득세(B)	1,234	58,600	47.5	12.7	16.2	3.5	4,316.0

주: 1)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은 공제대상기부금 총액을 동 공제 신청인원으로 나누어 추계

2)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(중복자) 및 중복자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외한 수치임

□ (귀속기준)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, 소득세수는 2026년 5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2025년 기부금에 대해서만 한시로 적용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한 개 연도만 발생

[표 3]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의 세수효과, 귀속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합계	-564	-	-	-	-	-564
종합소득세	-520	-	-	-	-	-520
근로소득세	-43	-	-	-	-	-43

□ (징수기준) 이를 징수기준으로 조정할 경우,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 564억원 감소로 추계

-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다음연도 연말 정산시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, 종합소득세는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
[표 4]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의 세수효과, 징수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합계	-	-564	-	-	-	-564
종합소득세	-	-520	-	-	-	-520
근로소득세	-	-43	-	-	-	-43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5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(안 제59조의4제8항)	-	-564	-	-	-	-56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